



ICR

Newsletter March, 2021



Address :3611, Hagun-ri, Yangchon-eup, Gimpo-si,
Gyeonggi-do , South Korea (10048)

Company Id No : 110111-243147
Tax & VAT Id No : 105-86-35114

Tel : (+82)2-6351-9001~5 / Fax : (+82)2-6351-9007
Home page : www.icrqa.com

목 차

1. TIIS 와 MOU 체결
2. KOLAS 인정범위 확대 완료
3. ICR Polska Linked in 계정 생성
4. 비대면 심사 및 교육 서비스
5. 2020/2021 PTB Ex PT 워크숍 참여
6.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7. UKCA 마크와 UKNI 마크에 대한 사용



TIIS 와 MOU 체결



■ ICR은 일본의 TIIS(Technology Institution of Industrial Safety) 와 2021년 2월 18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1965년에 설립된 TIIS는 일본의 후생노동성에 등록된 시험인증기관이며, IECEx 인증 및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ExCB 이자 ExTL입니다.

■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 ICR과 TIIS는 방폭기기 및 기계에 대한 인증 및 시험 업무에 대하여 다양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산업안전센터 / 양 대 송 선임연구원
T.010-5522-4529 / yds@icrqa.com

KOLAS 인정범위 확대 완료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서

주식회사 아이씨알 (ICR)

인정번호: KT652

법인등록번호: 110111-2431479
(또는 고유번호)

사업장소재지: (소재지)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3로7번길 112
(부속시설-1)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3로7번길 113

최초인정일자: 2015년 01월 16일

인정유효기간: 2019년 01월 04일 ~ 2023년 01월 03일

인정분야 및 범위: 별첨

발행일: 2021년 01월 28일

상기 기관을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KS Q ISO/IEC 17025:2017에 의거하여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ISO-ILAC-IAF 공동성명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인정된 분야 및 범위에 대한 기술적 능력과 시험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이 적절함을 인정합니다.



한국인정기구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의 상호인정협정(MRA) 서명기구입니다.

1/170

ICR은 2021년 01월 28일자로 KOLAS로부터 03.006에 대한 인정범위 확대를 인정받았습니다.

KOLAS 인정범위 확대 완료



- KOLAS 중분류 **03.006 산업용전기기기 확대**
 - IEC 60079-1:2014
 - EN 60079-1:2014

- ICR에서는 **내압방폭구조** 규격에 대한 KOLAS 인정범위 확대를 완료함에 따라, **본질안전구조, 분진방폭구조, 몰딩 방폭구조** 등 다양한 방폭 보호 형식에 대한 **ATEX 시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내압방폭구조 대상 제품군**
모터, 액츄에이터, 외함, 조명, 트랜스미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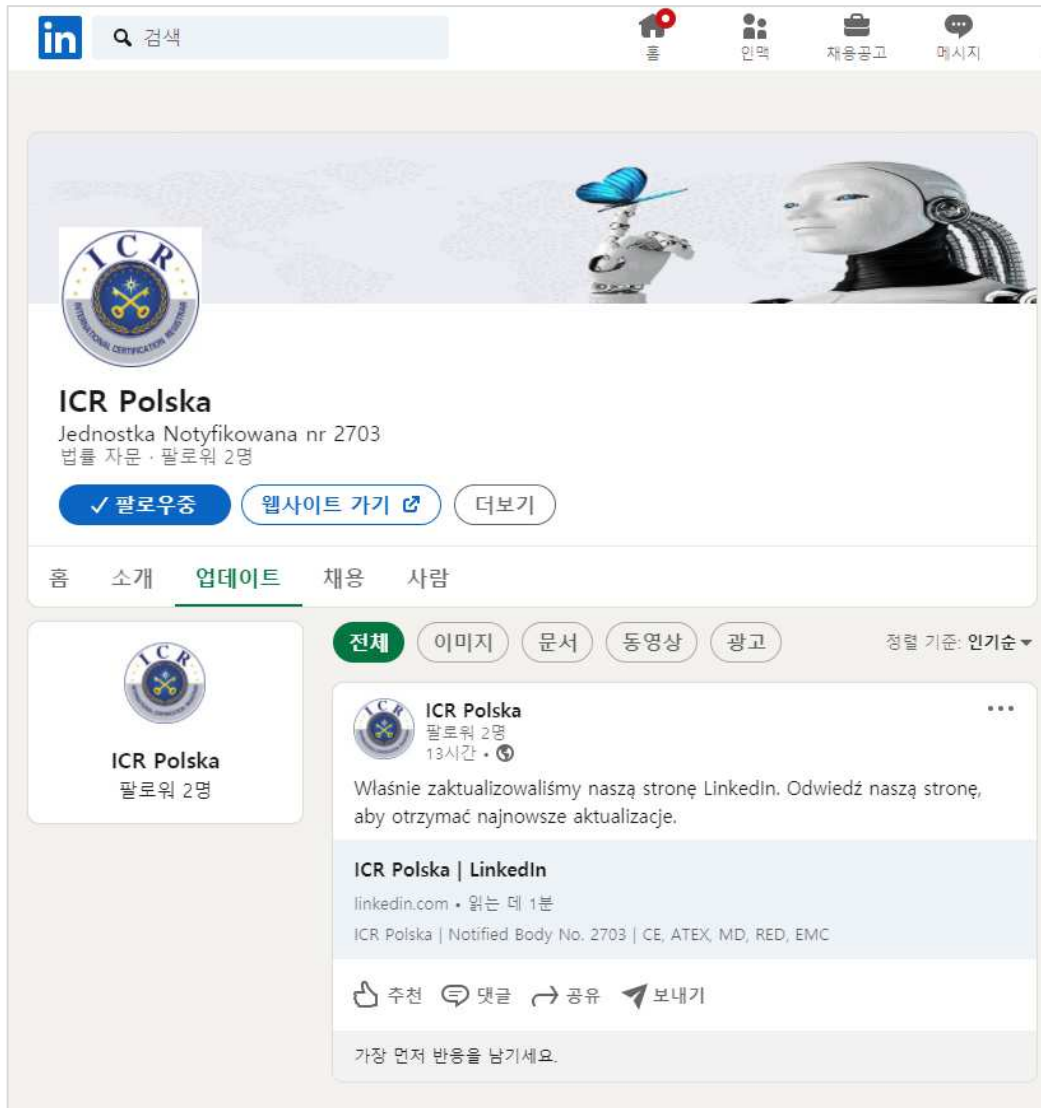


[내압시험 폭발챔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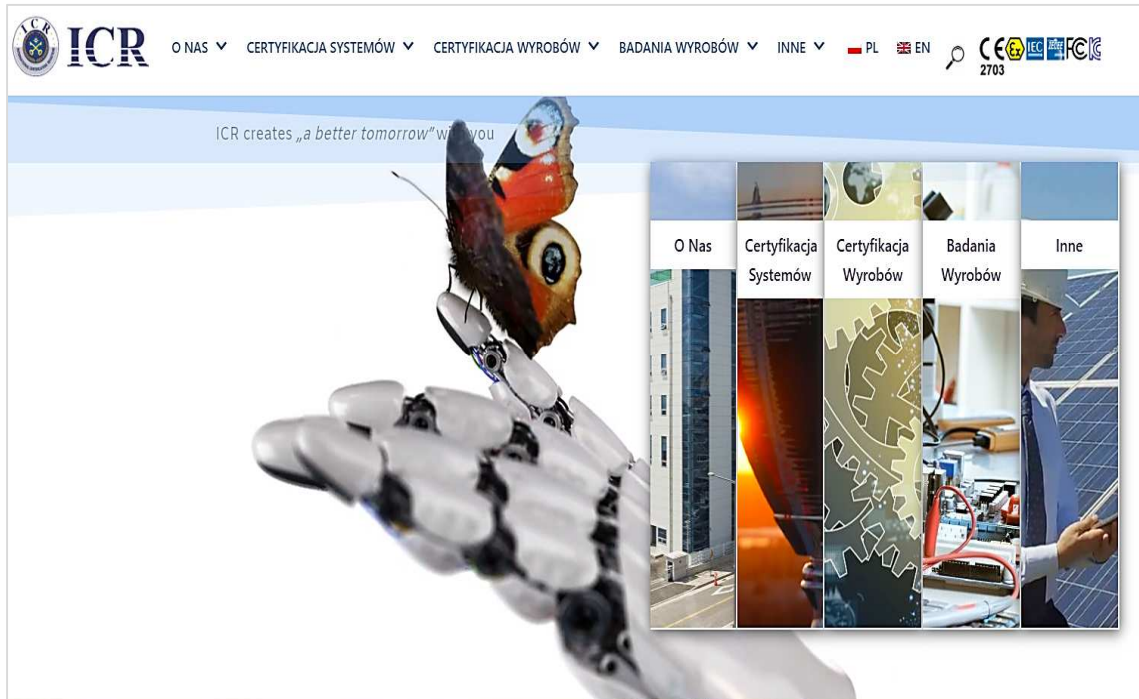
[과압 시험 장비]

ICR Polska Linked in 계정 생성



ICR Polska에서 Linked in 계정을 생성하였습니다.
ICR의 글로벌 고객만족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ICR Polska Linked in 계정 생성



- **Linked in**은 전 세계 4 억명 이상의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세계 최대의 글로벌 비즈니스 인맥 사이트입니다.
- **ICR Polska**는 ICR의 법인 회사로 폴란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Linked in 계정을 생성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인증 및 시험 서비스에 대해 앞으로도 신뢰감을 동반한 변화와 혁신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심사 및 교육 서비스



-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만남 없이 **비대면 심사 및 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ICR은 **2021년 01월 심사원 양성과정 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개최하였습니다.
- AU, TL, QM, EM, OH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생 분들이 각 모듈별로 적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여 전 교육생들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 비대면 심사는 현장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의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의 위치와 관계 없이, 어디에서든 심사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그리고 운영됨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ICR은 코로나 시대와 신기술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시스템인증본부 / 김 채 린 주임연구원
T.02-6351-9001 / kcl@icrqa.com

2020/2021 PTB Ex PT 워크숍 참여



▣ 독일에 위치한 비교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인 **PTB 기관** 에서
2020/2021 PTB Ex PT 워크숍을 지난 2021년 01월 25일에
개최하였습니다. COVID-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ICR 산업안전센터 **방폭인증팀**은 아래 프로그램에 참석
하였습니다.

- ✓ 2019 외함 시험(program "Test of Enclosures" 2019)
- ✓ 2019 배터리 시험(Program "Battery Testing" 2019)
- ✓ 시험 결과 모두 만족 및 참여 해외 기관 대비 **최대 43개**

참여기관 보다 높은 숙련도 수행 업무 결과 도출



<외함 시험>



<배터리 시험>

2020/2021 PTB Ex PT 워크숍 참여



Workshops 2020/2021 Tests of Enclosures / Battery Testing

2021-01-25 - 2021-01-28

Venue: Online Conference

Workshops 2020/2021 Tests of Enclosures / Battery Testing

2020/2021 PTB Ex PT 워크숍 참여



▣ 전세계 방폭 분야 담당자와 질의 및 토론 진행

- 외함 시험 관련 - 19 건 / 배터리 시험 관련 - 22 건

✓ 방수 방진 시험 순서에 대한 문의

→ IEC 60529 요구사항 상 정의된 순서는 없으나
구조적으로 표준은 첫 번째 특성(방진)을 먼저 진행하고,
다음으로 두 번째 특성(방수)을 처리합니다.

✓ 온도측정 - 열전대의 연결 관련 문의

→ 접착제, 접착 테이프, 코킹(밀봉) 등 열전대를 부착하는
방법은 많으나, 금속 접착 테이프의 경우 더 나은
열 전도로 인해 높은 온도가 측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착은 열 연결이 양호하고 샘플과
열전대 사이에 공기가 생기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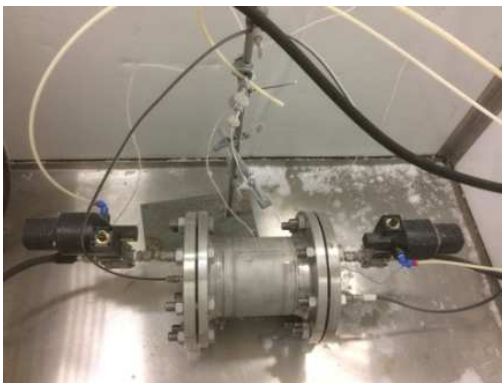
2020/2021 PTB Ex PT 워크숍 참여



▣ 저희 **ICR** 산업안전센터 **방폭인증팀**은 향후 개최 예정인 숙련도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고객분들께 제공하는 **방폭 인증 및 서비스 업무**에 대해 보다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입니다.

<21년도 진행 중 숙련도 프로그램>

- ✓ 2017 폭발 압력(program "Explosion Pressure" 2017)
- ✓ 2013 화염 전파(Program "Flame Transmission" 2013)



<폭발 압력 시험>



<화염 전파 시험>

☎ 문의처

산업안전센터 / 양 대 송 선임연구원
T.010-5522-4529 / yds@icrqa.com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전기냉장고 개정 사항)



- 고시 번호 : 제 2020-225호 (2020. 12. 30)
- 시행일 : 2021년 10월 1일부터

▣ 측정방법

1) 개정 내용 : 월간 소비 전력량 기준 강화

2) 개정 전

측정방법은 KS C IEC 62552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 전력량{여기서 "월간 소비 전력량"이라 함은 1일 소비 전력량×365/12로 산출한 값을 말한다}.

3) 개정 후

측정방법은 KS C IEC 62552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 전력량{여기서 "월간 소비 전력량"이라 함은 1일 소비전력량에 365를 곱하고 이 값을 12로 나눈 값에 **1.6을 곱한 값**을 말한다}.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전기냉장고 개정 사항)



■ 최저소비효율기준

- 1) 개정 내용 : 최저소비효율기준 산정 방식 변경
- 2) 개정 전 (최대소비전력량에 따른 기준식 적용)

구분	최대소비전력량 기준식 (단위 : kWh/월)
냉장고	$P \leq 0.037AV + 16.75$
보정유효내용적 500L 미만 냉동냉장고	$P \leq 0.025AV + 29.45$
보정유효내용적 500L 이상 1000L 미만 냉동냉장고로서 디스펜서 또는 홈바가 없는 경우	$P \leq 0.043AV + 16.19$
보정유효내용적 500L 이상 1000L 미만 냉동냉장고로서 디스펜서 또는 홈바가 있는 경우	$P \leq 0.043AV + 16.19$ +2.6(디스펜서 장착시) +0.022×냉장실홈바 가스켓길이(cm) +0.036×냉동실홈바 가스켓길이(cm)
보정유효내용적 1000L 이상 냉동냉장고로서 디스펜서 또는 홈바가 없는 경우	$P \leq 0.021AV + 33.25$
보정유효내용적 1000L 이상 냉동냉장고로서 디스펜서 또는 홈바가 있는 경우	$P \leq 0.021AV + 33.25$ +2.6(디스펜서 장착시) +0.022×냉장실홈바 가스켓길이(cm) +0.036×냉동실홈바 가스켓길이(cm)

- 3) 개정 후 (보정유효내용적에 따른 기준 값 적용)

구분	최저소비효율 기준 값 (단위 : Wh/L)
냉장고 및 보정유효내용적 500L 미만 냉동냉장고	380
보정유효내용적 500L 이상 냉동냉장고	95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전기냉장고 개정 사항)



■ 소비효율 등급부여지표

- 1) 개정 내용 :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1 L당 소비전력량을 소비효율 등급부여지표로 개선
- 2) 개정 전
 - 당해 모델의 **최대소비 전력량[kWh/월]**과 당해 모델의 **월소비전력량[kWh/월]**의 비를 소비효율 등급부여지표로 함.

구분	계산식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당해 모델의 최대소비전력량 [kWh/ 월] / 당해 모델의 월 소비 전력량 [kWh/ 월]

- 3) 개정 후
 - 다음 표와 같이 해당 모델의 **월간소비전력량과 보정유효내용적의 비**를 소비효율 등급부여지표로 함.

구분	계산식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해당 모델의 월간소비전력량 [Wh] / 해당 모델의 보정유효내용적 [L]

☎ **문의처**
전기안전평가센터 / 양 영 준 전임연구원
T.010-5522-3613 / yangyj@icrqa.com

UKCA 마크와 UKNI 마크에 대한 사용 - 브렉시트 이후 영국 시장 진출에 대하여



■ UKCA 정의 (United Kingdom Conformity Assessed)

브렉시트에 따라 2022년부터 영국 GB(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시장에 수출하는 제품에는 영국 고유 인증인 UKCA(UK Conformity Assessed) 마크만 인정되나, 북아일랜드 시장은 여전히 CE 마킹 혹은 UKNI (UK Northern Island) 마킹이 요구된다.

▶ 영국 GB(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에서 상품 판매

- 2021년 1월 1일부터 기술 요구사항('필수 요구사항')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적합성 평가 프로세스 및 표준은 현재 CE 마크와 거의 동일한 수준임.
- UKCA 마크는 2021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함. 단, 조직이 새로운 요구사항에 적응할 수 있도록 CE 마크를 2022년 1월 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UKCA 마크와 UKNI 마크에 대한 사용 - 브렉시트 이후 영국 시장 진출에 대하여

- 기존 재고에 대한 관리

CE 마크 등의 제품 적합성 마크가 부착된 기존 재고품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기존 표시와 해당 인증기관의 번호로 영국 시장에 계속 진출할 수 있음.

(예 : 영국 제품 적합성 인증 품목에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UKCA 마크가 필요한 제품일지라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기존 재고에서 나온 제품에 한하여, 여전히 영국에서 CE 마크 부착만으로 판매 가능.)

▶ EU에서 상품 판매

- UKCA 마크는 EU 시장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CE 마크가 필요한 제품은 EU에서 판매하기 위해 여전히 CE 마크가 꼭 필요함.

UKCA 마크와 UKNI 마크에 대한 사용 - 브렉시트 이후 영국 시장 진출에 대하여



■ UKNI 정의 (United Kingdom Northern Island)

UKNI 마크는 북아일랜드(NI) 시장에 출시될 제품에 대한 새로운 적합성 표시로, 영국에 기반을 둔 기관에 의해 제3자 적합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마크이다.

- 북아일랜드(NI) 의정서(Protocol)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벨파스트 협정(Good Friday Agreement)을 계기로 NI와 ROI (아일랜드 공화국) 사이에 물리적 경계를 가져가지 않는다는 합의를 지키기 위해 NI에는 ROI와 마찬가지로의 CE 마킹을 적용.
- 북아일랜드 -> 영국(GB) 진출의 경우, NI에서 사용하는 적합성 표시에 기초하여 영국 시장에 북아일랜드의 적격 상품(Qualifying products)을 판매 가능함. (단, Northern Irish Business 운영 본부가 NI에 기반을 두거나 본사가 UK내에 있는 경우에만 제재없이 진출 가능.)

UKCA 마크와 UKNI 마크에 대한 사용 - 브렉시트 이후 영국 시장 진출에 대하여



■ UKNI 마크가 필요한 경우

- 북아일랜드 시장에 특정 상품(대부분 CE 마킹 대상 상품)을 배치하는 경우
- 당사 제품이 의무적으로 제3자 적합성 평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 2021년 1월 1일부터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영국 기관(UKAB)을 사용할 경우

▶ 다음 중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 UKNI 마크를 사용할 필요 없음

1. EU의 시장에 상품을 내놓고 있음
2. EU 인증 기구(NB)를 사용하여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계획임 -> EU 마크만으로 충분함.

☎ 문의처

전파시험센터/ 박종민 책임연구원
T.070-5083-2664 / kaelu@icrqa.com

UKCA 마크와 UKNI 마크에 대한 사용 - 브렉시트 이후 영국 시장 진출에 대하여



▣ 시장별 통용되는 마킹

	제품 유형	허용되는 마킹 혹은 조합
북아일랜드 (NI)에 제품을 배치할 경우	제작된 제품이 EU 인증기관 (EU NB)을 통한 검증 후 NI 시장에 제품 배치 경우	CE 마킹
	제작된 제품이 UK 기반을 둔 인증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 아 NI 시장에 제품 배치의 경우	CE + UKNI (UKNI 단독 부착 불가)
영국(GB, 북아일 랜드 제외)에 제품을 배치할 경우	제작된 제품을 GB 시장에 배치 할 경우 (2021년 12월 말까지)	UKCA 혹은 CE 마킹
	제작된 제품을 GB 시장에 배치할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UKCA 마킹 (동봉된 문서 혹은 패키징에 부착 가능, 제품에 마크 부착 의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격한 (Qualifying) NI 제품을 GB 시장 에 배치할 경우	적격한 NI 제품은 제한없이 GB 시장에 배치 가능 (Northern Irish business 기반의 경우에만)	CE 마킹 혹은 CE + UKNI 마킹만으로 영국 GB 영 역에 통관 가능
EU 시장에 제품을 배치할 경우	제작된 제품을 EU 시장에 배치할 경우	CE 마킹만 허용 (EU NB를 활용) * UKCA 혹은 CE + UKNI 마킹 불허

